

동호회 운영 내규

제정

2025년 06월 27일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“라 한다)의 동호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,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단결을 증진하며, 활기찬 조직 문화를 통해 연합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동호회“란 연합회 회원들이 교양, 취미,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.
2. “위원회“란 동호회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지원하는 연합회의 “대회 및 동호위원회”를 말한다.
3. “사무처“란 동호회 등록, 계획, 정산 등 업무를 지원하는 “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”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내규는 연합회에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하며, 동호회 회원은 연합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장 동호회 등록 및 관리

제4조(사무처 임무)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동호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관리
2. 동호회 등록 및 지원금 지급 업무
3. 동호회 활동 실적 평가 및 우수동호회 선정 자료 보고

제5조(위원회 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동호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총괄 관리
2. 동호회 활동 실적 평가 및 우수동호회 선정
3. 동호회 활동이 연합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활동 제한 또는 조정

제6조(동호회 등록 절차) ① 동호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동호회 등록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

2. 동호회 활동계획서

- ② 사무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통보하며, 등록은 원칙적으로 매년 단위로 신청한다.
- ③ 기존 동호회 등록 신청은 매년 2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 단 신규 등록은 상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.

제7조(동호회 등록 기준) ① 동호회는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- ② 동호회는 특정 직위나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은 1인이 2개 동호회까지 등록할 수 있다.
- ④ 동호회 회원은 경기단체연합회 직원 및 회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.

제3장 동호회 지원

제8조(동호회 지원 기준) ①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각 동호회 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회원 수 10명 이상인 동호회에 한하여 연 2회, 각 회당 10명 이내 기준으로 1인당 20,000원을 지원한다.

2. 최대 지원 횟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7개 동호회까지로 제한한다.

- ③ 동호회 활동비는 활동계획서 제출한 후,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급 한다.

- ③ 동호회 활동비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,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.

제9조(우수동호회 포상) ① 위원회는 매년 동호회 활동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동호회 1개를 선정한다.

- ② 선정된 우수동호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500,000원을 지급한다.

- ③ 우수동호회 선정 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(지원 제외 기준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활동비 및 포상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1. 등록 후 활동 실적이 없는 동호회
- 2.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 동호회
- 3. 활동비 지원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

4. 위원회의 지시에 불응한 동호회

제4장 활동 및 결과보고

제11조(활동계획서 제출) ① 동호회 활동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활동 7일 전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동호회 활동계획 및 지원 신청서[별지 제2호 서식]
2. 활동 세부 계획서 및 예상 인원 명단
3. 입금 계좌번호

제12조(활동실적 보고) ① 동호회 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동호회 활동보고서[별지 제3호 서식]
 2. 경비사용 영수증
 3. 활동사진
- ② 위원회는 활동실적을 검토하여 다음 지원 여부 및 포상 대상 선정에 반영한다.

부칙(2025.06.27.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표

구분	지원기준	지원금액	비고
활동지원	○회원수 10명 이상 ○연 2회(각 회당 10명 까지)	1인당 20,000원	연 7개 동호회까지 지원
우수동호회 포상	○연 1회 우수동호회 선정	500,000원	1개 동호회 선정

(별지 제1호 서식)

동호회 등록 신청서

동호회명					
동호회 목적					
활동계획	활동계획에 대한 요약 * 세부활동계획의 경우 활동계획 세부내역서 별첨				
회 원 수		회 장		연락처	
		총 무		연락처	
회원명부	소속	성명		소속	성명
상기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					
2025년 월 일					
○○동호회 회장 (서명)					
첨부서류 : 동호회 활동계획서 1부					

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대회 및 동호회 위원회 귀하

(별지 제2호 서식)

동호회 활동계획 및 지원 신청서

동호회명		행사명	
참가인원		행사장소	
일 시		지원신청금액	
입금계좌번호			
☐ 행사개요 ☐ 참가자명단 ☐ 소요경비 세부산출내역 * 자체충당 및 지원경비 구분 기재			
상기와 같이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. 2025년 월 일 ○○동호회 회장 (서명)			
* 동호회 행사 참가후 동호회활동보고서(사진첨부)를 7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* 예산사정에 따라 신청경비가 조정되어 지급 될 수 있습니다.			

동호회 활동보고서

동호회명		행사명	
참가인원		행사장소	
일 시		총소요경비	- 자체충당 : - 지원경비 :
☐ 활동결과 * 활동 사진 첨부 ☐ 참가자 명단 ☐ 소요경비 세부내역 * 자체충당 및 지원경비 구분 기재			
2025년 월 일			
○○동호회 회장 (서명)			